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북과학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증명발급 종류를 일부추가 신설하고 각종 증명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증명발급 종류 추가 신설(2종)
 - 학위수여(예정)증명
 -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각종 증명수수료 조정
 - 국문증명 1통당 200원 → 300원
 - 영문증명 1통당 3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500원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각종증명별 수수료표의 종류란중 제12호 다음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수수료란중 “200원”을 “300원”으로, “영문증명 1통당 : 300원”을 “외국문증명 1통당 : 500원”으로 한다.

13. 학위수여(예정)증명
14.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각종증명별 수수료표			[별표] 각종증명별 수수료표		
종류	수수료	비고	종류	수수료	비고
1. 입학증명	• 국문증명 1통당: 200원	이 표에 규정 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외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장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 수료를 징 수하지 아 니함.	1.....	• 국문증명 1통당 200원
2. 합격증명	• 영문증명 1통당: 300원		2.....	• 안국문증명 1통당 500원
3. 재학증명			3.....	
4. 휴학증명			4.....	
5. 복학증명			5.....	
6. 재적증명			6.....	
7. 재직증명			7.....	
8. 수료(예정)증명			8.....	
9. 졸업(예정)증명			9.....	
10. 성적증명			10.....	
11. 학사(생략)특수증명			11.....	
12. 교육비납부증명			12.....	
(신설)			13. 학위수여(예정)증명	
(신설)			14. 교직원(사)수여증명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

증명의 종류	수수료의 금액	비 고
1. 입학증명 2. 합직증명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직증명 7. 제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위수여(예정)증명 12. 학력부(생활기록부)증명 13.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14. 교육비 납입증명	1종당 국문증명의 경우에는 300원, 외국문증명의 경우에는 500원	이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